

영등포구의회
제16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의원 대표발의】



2012. 2. 23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08호로 2012년 2월 10일 김용범 의원의 3인
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
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만4세 이하의
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년 7일 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
하여 보육과 가정을 일치 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
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만4세(매년 1월1일 기준)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
자녀의 질병치료 또는 자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자녀와 함께
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7일
이내의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제13항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77조
-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 제7조의3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성공무원의 자녀보육과 가정을 일치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녀의 질병 또는 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24조제13항에 매년 1월1일 기준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,

2011. 11. 8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여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입법한 사례가 있음.

- 자녀 보육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첨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특별휴가 일수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길 바람.

[참고사항]

□ 구청 총무과 검토 의견

- 입법안의 특별휴가는 타 자치단체,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성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별 첨 : 조례 개정 관련 검토 의견서 1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검토

총무과-2994(2012.2.13)호

□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, 2010.7.15)
 - 제7조의3제1항 :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타 자치단체 조례

- 『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』
 - 제20조제3항 : 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 [신설 2011.11.8.]

□ 입법안 검토사항

의원발의 안	총무과 검토	비 고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⑬ <u>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7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	○ 상위법령 저촉여부 : “저촉안됨” - 관련법령 :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○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 현황 - 경기도 : 2011.11.8일 유사규정 신설 - 강원도 : 조례안 상정 심의 중	

□ 부서의견

○ 검토의견

- 만4세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육아공무원을 배려하고 조직내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 등 취지와 목적은 의미있음.

○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결과(2.9) : 신중한 판단 요구

- 행정안전부에서 복무조례 표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취지 고려
-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검토
- 특별휴가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 필요

※ 특별휴가 : '특별한 사유'가 발생할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서 연가처리 하기에 부적절한 사유여야 할 것.

○ 결 론 : 입법안의 특별휴가는 타 자치단체,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성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※ 특별휴가 평균 일수(2011.7.7. 행안부 일제조사)

국가공무원 평균 일수	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	지방공무원 평균 일수	우 리 구
27일	26일	35일	33일

※ 근로기준법 : 특별휴가 등 관련조항 없음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2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

[시행 2010. 7.15] [대통령령 제22275호, 2010. 7.15, 일부개정]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7.15]